

예산총칙

202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49,943,375	28,498,301
일반회계	853,388,534	25,601,656
특별회계	96,554,841	2,896,645
공기업특별회계	82,673,232	2,480,197
상수도사업	43,270,485	1,298,115
하수도사업	39,402,747	1,182,082
기타특별회계	13,881,609	416,448
의료급여기금	2,487,189	74,616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244,478	37,334
밀양담주변지역지원	267,426	8,02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45,649	4,369
수질개선관리	5,014,990	150,450
중소기업육성자금	4,721,877	141,65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991,662천 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52,4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